

2024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 공모 FAQ

2024. 1. 29.(월) /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 창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2024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FAQ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FAQ를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Q1.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 작품이 다르다면 한 신청주체(문예회관 또는 공연단체)당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본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에서 한 신청주체가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원입니다. 따라서 신청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대 지원금액 내 신청만 가능**합니다.

Q2. 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신청주체가 직접 집행하되,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및 증빙등록 필수입니다.

Q3. 10% 자부담 책정이 필수인가요?

→ ① 문예회관이 신청시, 문예회관의 자부담 10% 책정이 필수이며, 대관료는 자부담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② 민간단체가 신청시, 민간단체 자부담은 없으나 공모계획서에 협력 문예회관의 10% 집행계획(홍보, 마케팅, 연계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사업 정산 시, 협력 실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4. 유료 공연이 필수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티켓은 장당 최소 정가 10,000원 이상 책정하되, 온라인 티켓예매·발권 필수입니다. 할인 정책을 활용하시어 판매 할수 있으며, 공연 예술통합전산망(KOPIS)에서 '24년 티켓판매수·판매액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Q5.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사업 참여 시 초청 가능 비율이 있나요?

→ 초청의 의무는 없으며 필요 시, 각 공연 회차별 총 관객석 대비 10% 이내로 소외계층 초청을 포함한 무료초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6. 협력하는 문예회관이 2곳 이상일 경우, 필수 조건인 자부담금 10%는 각각 책정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참여하는 문예회관의 자부담을 총 합한 비율이 10%를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7. 문예회관이 신청 주체로 참여하였다면 협력대상으로는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신청주체이면서 협력대상으로 중복 참여가 가능하지만 동일 작품으로는 불가능하며, 너무 많은 신청 건에 협력대상으로 참여할 경우 심의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Q8. 사업 신청 이전에 문예회관과 협력이 필수인가요?

→ 네, 맞습니다. 신청하시기에 앞서 협력할 문예회관과 논의하여 신청주체를 정한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9. 신청주체가 민간 단체일 경우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단체의 수에 제한이 있나요?

→ 작품이 다르다면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한 신청주체(문예회관 또는 공연단체)당 협약 가능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신청 건에 협력대상으로 참여할 경우 심의 시 해당 내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Q10. 문예회관이 편성한 자부담금 10%의 경우 무조건 문예회관에서 직접 집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 문예회관이 편성한 자부담금은 e나라도움을 통해 직접 집행 및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예회관이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이 어려울 경우, 협력대상으로 참여하여 신청주체에게 자부담금을 이관하여 신청주체가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Q11. 문예회관이 신청 주체일 경우 단체에게 용역비 항목으로 보조금을 집행한다면 정산 증빙 자료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단체에게 용역비 항목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 정산 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기본 계약 서류 및 기타증빙 서류(출연자 및 스태프 계약서,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완납증명서,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 등 매뉴얼에 기재된 적격증빙)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정 단체 대상으로 안내 자료 배포 예정입니다.

Q12. 민간단체의 A라는 작품으로 신청주체와 협력대상에 중복 참여할 수 있나요?

→ (가능) 문예회관이 신청주체일 경우, 민간단체의 작품A는 가, 나, 다 문예회관 각각 협력대상으로 참여 가능

(불가능) 민간단체가 신청주체로 작품 A를 신청하였을 경우, 작품 A는 다른 신청주체의 협력대상으로 참여할 수 없음

Q13. 총람에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공연장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요?

→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문예회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기준(서울 지역 제외)으로 하고 있으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14. 문예회관이 신청주체일 경우, 단체에게 용역비 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총 사업비(자부담금+보조금) 전체를 용역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총 사업비(자부담금+보조금) 중 문예회관의 자부담금을 제외한 일부 예산을 단체에게 용역비 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II. 공연예술 유통

Q1.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 문예회관 또는 민간단체 등 한 신청주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협력주체는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Q2. 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신청주체가 직접 집행하되,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및 증빙 등록 필수입니다. 신청주체의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의 의무가 있으며, 협력주체의 경우 2차 교부신청 전까지 자부담금을 신청주체에게 이관하여야 합니다.

Q3. 협력을 위해 단체-문예회관 간 협약 체결하는 과정이 필수인데, 현재 (공모)기간 상 협력을 맺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대체할 방법이 있나요?

→ 신청주체와 협력단체 간 협약체결은 1차 서류심의 선정단체에 한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 시 협력 내용을 기입하셔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필수로 미리 협의하셔야 합니다.

Q4. '자부담 30%'에 대한 분배 비율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 본 사업은 신청주체 단일 사업이 아닌, 여러 협력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연 회차와 무관하게 참여주체 모두 균등하게 배분**하시어 조성 바랍니다.

【예시】 신청주체가 민간단체이며 협력주체가 2개 문예회관이라면, 각 10%의 배분율로 조성하셔야 합니다.

Q5. 차세대 기획인력의 활용 기간은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하나요?

→ 차세대 기획인력은 사업기간 내 활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고용기간은 없으나, 단기 고용보다는 사업의 전체 흐름과 현장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간동안 채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Q6. 외국인도 차세대 기획인력으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본 사업은 국내 공연 예술 유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되며 차세대 기획인력 또한 국내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7. 공간 보유·운영 단체/기관이 협력주체가 되었을 때, 공간협력을 예산협력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협력주체로 참여하는 공간 보유·운영 단체/기관은 예산협력과 공간협력이 필수입니다. 공연 공간 대관 투자는 필수이며, 그 외에 예산협력도 추가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물 제공은 협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8. 사업 신청서 프로젝트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 프로젝트 책임자는 신청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기관 중 해당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책임질 총괄 책임자로, 신청 주체 및 협력 단체·기관 구성원 중 협의하여 1인을 선정, 사업 신청서에 명시하고 인터뷰 심의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Q9. 차세대 기획인력의 경력 산정 및 활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차세대 기획인력은 현장 경력 3년 미만의 경력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학력은 무관합니다.

단, 신청 시점으로부터 이전 6개월간 신청 및 협력 주체에 고용된 이력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차세대 기획인력은 최소 1인 필수 활용해야 하며, 최대 2인까지 가능합니다. (최종 선정 후 교부신청 시, 해당 차세대 기획인력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증명서 등 제출 필수)

※ 23년 공연유통협력 지원 선정 단체의 경우, 사업 운영 시 선정한 차세대 기획인력 재고용 가능(단, 현장 경력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

Q10.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단체일 경우, 신청주체(기획공연)와 협력주체(공연장 협력)로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요?

→ 신청주체 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지만, 협력주체로는 다른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단, 한 작품의 신청주체이자 협력주체로 동시 참여는 불가합니다.

Q11. 공연장 등록증이 필수로 있어야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공연장의 기준은 등록공연장을 포함한 전국의 공연 가능한 모든 공간입니다. 단, 공연장소가 등록공연장이 아닌 경우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등록공연장 외 박물관, 미술관, 야외공연장, 유희공간 등과 관련된 목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전국 등록공연장 리스트 <문체부>	* 전국 문예회관 리스트 <문체부>
www.mcst.go.kr - 주요정책>분야별정책>문화예술> '2022 등록공연장 현황'	www.mcst.go.kr - 주요정책>분야별정책>문화예술> -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전국 소극장 리스트 <한국소극장협회>	* 그 외, 새로운 유희공간 <지역문화진흥원>
http://smalltheater.or.kr - 회원 소극장 안내	www.rcda.or.kr - 자료실>연구보고서>2021 유희공간 문화재생산업공간 운영 실태조사

Q12. 신청주체 의무사항 중 지역 워크숍·교육은 해당 협력기관이 속한 지역마다 진행해야 하나요?

→ 해당 공연기획 방향(콘셉트)에 적합한 지역공연예술가, 지역차세대인력, 공연관객 등을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 운영 필수입니다.

III. 공통

Q1. 동일한 신청주체가 같은 공연 작품으로 본 사업의 하위 사업(공모)에 모두 중복 지원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작품으로 <지역맞춤형 중소형 콘텐츠 유통>, 또는 <공연예술 유통>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Q2. 장르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 신청 작품의 주된 소재를 지원 가능한 장르 내에서 판단하시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장르 구분은 각 공모요강 참조

Q3. 본 사업을 통해 발생된 수익(티켓판매액, 부가상품 판매 등)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수익’은 전체 자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초과한 매출액은 자부담금 내 포함하여 총 사업비 예산 변경(증액) 신청 및 승인 후 연내 집행하거나, 사업종료 시 정산보고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단체의 공연예술 사업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4. 사업 예산으로 대관료를 책정할 수 있나요?

→ 문예회관-민간단체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신청하는 공연에 대한 지원이므로, 대관료 책정은 불가능합니다.

Q5.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이므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관리 통합시스템)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다른 수단을 통해 사업 참여가 가능할까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지원 받게 되는 기관·단체는 반드시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지만, 협력대상으로 참여할 경우에 신청주체 이관형으로 신청주체에게 자부담금을 이관하여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 **문예회관이 신청주체일 경우 필히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Q6. 전체 공모 심의 일정과 과정이 궁금합니다.

→ 공모 접수(1~2월 3주), 심의(2~3월)에 진행됩니다. 특정 문예회관 또는 민간단체에 지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심의를 프로그램별 지원 단가가 높은순으로 ▲국립예술단체-지역거점공연장 전막 공연(최대 10억원, 8건)(1월 심사 공모 완료), ▲공연예술 유통(최대 5억원, 23건 내외),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최대 1억원, 220건 내외) 순으로 진행합니다. 국립예술단체와의 협업이 확정된 문예회관은 공연예술 유통 및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7. 민간극장은 본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 민간극장은 <공연예술 유통> 사업의 협력주체로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민간소극장의 경우, 유통 기능 활성화를 위해 기획사업을 통한 사업 참여를 요청할 계획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8. 신청주체 조건 관련하여 최근 3년간 2건 이상 공연 발표 실적은 어떤 의미인가요?

→ 공연을 진행한 기간과 무관하게 다른 제목/콘셉트의 공연을 2번 발표한 것을 의미합니다.

Q9.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전 사업자등록증으로 진행했던 공연의 실적 인정이 불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내 단체명과 대표자가 같을 경우 동일 공연으로 간주하여 실적 인정이 가능하며 추후 심의 시 제출하신 지원 신청서 내 공연 발표 주요 실적 증빙 자료 제출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Q10. 외국인 출연자의 경우 출연 비율 제한이 있나요?

→ 아닙니다. 제한은 없지만 외국인 출연자의 경우 세금 공제액이 국내 거주인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내 주요 인력 참여 기입은 필수로 해주시고, 심의 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Q11. 부가세액의 경우, 보조금으로 편성 가능한가요?

→ 사업자 유형에 따라 편성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면세자(간이과세자 포함)의 경우 매입 부가세액을 보조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세자(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매입 부가세액을 보조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금)로 편성 및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Q12. 현재 고유번호증 단체로 사업자를 새로 개시하려 합니다. 공모 기간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 등록증으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공모 접수 기간 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단체명 및 대표자가 동일하며 공연 실적 증빙이 가능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Q13. 신청 주체에 서울 유통 공연 신청 불가라고 되어있는데 이전에 서울에서 진행한 공연으로는 사업 신청이 불가한가요?

→ 아닙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서울에서 진행하는 공연에 한해 신청이 불가하며, 이전에 서울에서만 진행했던 공연으로도 지원 가능합니다.

Q14. 해외 초청 작품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해외 작품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것은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며 공연의 라이선스만 구입하여 진행하는 것도 동일하게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창작작진과 국내 신청 및 협력주체의 협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15.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않으면 문예회관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나요?

→ 문예회관이 신청주체일 경우에는 e나라도움을 필수로 사용하여야 하며, 협력주체일 경우에는 신청주체 이관형으로 신청주체에게 자부담을 이관하여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Q16. 신청 작품이 당해년도를 포함하여 이전년도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신청 가능 및 가점 대상인가요?

→ '24년에 타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받는 작품으로 중복신청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23년까지 타 기관으로부터 국비/지방비 등 창작지원 선정된 작품은 가점 대상입니다.

Q17. 고유번호증만 소지하고 있는 문예회관은 본 사업에 신청이 불가한가요?

→ 고유번호증만을 소지한 공연단체, 기획제작사, 공연장 및 개인예술가 등 신청주체로 참여 불가합니다.

Q18. 개인 아티스트와 협력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연단체-공연장·시설-기획·제작사 간의 협력만 가능합니다.

Q19. 공모 시점 이전에 공연장으로부터 기획초청 공연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지원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 기획초청 공연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20. 지역 공연장을 대관하여 참여해도 지원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발성 대관공연이 아닌 협력기관·단체 간 구체적인 제작 및 유통 계획이 있어야만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Q21. 대표자가 동일인이고, 여러 사업체를 2개 이상 지역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상호 협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동일한 사업체는 단일 주체로 간주하며, 이 경우 상호 협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기 서로 다른 주체가 본 사업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합니다.

Q22. 신규 창제작 작품은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 창작작품만 가능합니다.

* 레플리카, 라이선스 작품의 공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3. 입장권을 유료화하기 어려운 야외공연장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연관람료는 최소 10,000원 이상 유료가 원칙입니다.

Q24. 신청 대상 사업에서 “23년 12월 까지 국내에서 1회 이상 전막공연·발표된 기 창작작품”은 반드시 유료화로 진행해야 하나요?

→ 무료로 진행했던 공연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막 트라이아웃 공연 또는 전막 쇼케이스 공연으로 진행한 작품일 경우, ‘유료화’된 건만 기 창작작품으로 인정합니다.

Q25. 사업 선정 전에 진행된 협력에 대한 예산도 편성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지원 선정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진행되는 협력에 대한 사항만 편성 가능합니다.

Q26. 유료화된 전막 트라이아웃(tryout) 공연과 전막 쇼케이스 공연을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 해당 전막 트라이아웃(tryout) 공연과 전막 쇼케이스 공연이 유료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포스터, 프로그램 북 등과 티켓 예매 내역, 정산 내역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티켓 예매처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는 이메일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27. 문예회관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공연이 있다면 공연 제작사로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타 문예회관과 협력하여 참여가 가능한가요?

→ 문예회관의 공연권 등을 단독으로 보유한 창작작품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문예회관-제작사 공동제작인 경우는 불가) 이 경우에는 출연자 및 인력계약 등 운영비를 직접 계약 및 집행하셔야 합니다.

Q28. 기존 진행했던 공연에서 디벨롭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기존 진행하였던 공연의 성격(컨셉 등)을 유지한다면 가능하지만, 완전한 다른 작품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작품으로 간주하여 심의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시 변경 및 보완되는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해 주세요.

Q29. e나라도움 내 공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e나라도움 로그인 ▶ (상단) 공모사업찾기 선택 ▶ 사업연도 '2023' 선택 ▶ 공모명(①2024 지역맞춤형 중소기업 콘텐츠 유통 ②2024 공연예술 유통) 검색 ▶ 해당 사업명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Q30. 본 사업에 신청한 공연으로 협력한 공연장 외에 다른 지역에서 공연이 가능한가요?

→ 본 사업의 사업 기간 중 서울을 포함한 타 지역(문예회관)에서 공연은 진행은 불가합니다. 제출한 지원신청서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Q31. 발생한 수익금이 총 자부담금 이내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 본 사업에서 말하는 '수익'은 전체 자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수익금이 총 자부담금 이내일 경우에는 신청주체와 협력주체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Q32. 지방에 위치한 문예회관은 온라인 티켓 예매·발권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 결제 등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티켓은 장당 최소 10,000원 이상 책정하여야 하며, 추후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티켓판매수·판매액을 공개할 예정으로 온라인 티켓 예매·발권은 필수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Q33. 가점 사항에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중복으로 합산되어 심의에 반영되나요?

→ 중복으로 다수의 부문에 해당하더라도, 최대 가점은 총 5점입니다.

Q34. 2024 국립예술단체 전막 공연 사업에 협력하는 문예회관이 중복으로 공연예술 유통 및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에 참여 가능한가요?

→ 2024 국립예술단체 전막 공연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주체 문예회관은 2024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 사업에 포함된 하위사업 중복신청 및 참여가 불가합니다.

* 해당 문예회관

: 당진문예의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오페라하우스, 대전예술의전당, 세종예술의전당(세종시문화관광재단), 울산문화예술회관,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3·15아트센터(창원문화재단), 통영국제음악당